

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산업육성(알로에 웰빙 테마 산업화) 사업외 260 건인

106,594,121,210 원으로서

- o 명시이월 (166 건) 46,261,747,750 원
- o 사고이월 (40 건) 13,695,310,580 원
- o 계속비이월 (55 건) 46,637,062,88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